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 의원 발의)

의안 번호	521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2월 06일

발 의 자: 김 경 의원(1명)

찬 성 자: 강동길, 경기문, 김성준, 김용일, 김원태,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철성, 서준오, 성흠제, 소영철, 송도호, 송재혁, 신복자, 아이수루, 왕정순, 유정인, 유정희, 윤종복, 이민옥, 이소라,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종태, 임규호, 임만균, 전병주, 정준호, 최재란, 한 신, 홍국표 의원(39명)

1. 제안이유

-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법령 및 조례에서 대상지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어 반지하주택에 대한 배려가 미약한 상황임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중에 “침수 우려가 있거나 반지하주택을 포함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반지하주택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중에 “침수 우려가 있거나 반지하주택을 포함하는 경우”를 포함시킴(안 제3조제1항제4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침수 우려가 있거나, 반지하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 상범위 등) ① 영 제3조제1항제 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 략)</p> <p><u><신 설></u></p> <p>② ~ ⑦ (생 략)</p>	<p>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 상범위 등) ①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침수 우려가 있거나, 반지하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u></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문서번호

2022101500000004

미첨부 사유서 (2호)

요청인 : 김경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류동균 주무관

접수일 : 2020.10.15.

회신일 : 2020.10.18.

내용문의 : 02-2180-7952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3조1항 제4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에 “침수 우려가 있거나, 반지하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의 조항을 신설하여 서울시 예산 지출의 증가가 예상되나, 합리적 추산은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3조제1항제2호)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법령 및 조례에서 대상지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어 반지하주택에 대한 배려가 미약한 상황으로, 조례안 제3조1항1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2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및 3호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 개선지원구역외에 조례안 제3조1항 제4호에 “침수 우려가 있거나, 반지하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의 근거조항을 신설한 사안으로, 이로인한 서울시 안전진단 비용지원등 관련 예산지출의 증가가 예상되나, 이의 객관적 비용추계는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예산분석팀장 이정수

분석관(주무관) 류동균

☎ 02-2180-7952

e-mail : rooster72@seoul.go.kr